

## 한국석유공사 시설물 대여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석유공사 사옥 일부 시설물의 대외 개방(임대)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시설”이란 한국석유공사 (이하 “공사”이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대강당, 다목적체육관, 외부공개공지를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임대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시설 및 부대시설관리·유지를 위한 실비를 말한다.
4. “시설의 개방”이란 직원과 직원가족이 아닌 개인 및 단체에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용시간”이란 사용자가 주목적에 사용한 시간, 사용 전 준비시간과 사용 후 정리를 완료한 시간까지를 말한다.
6. “휴일”이란 공사 취업규칙 제22조에 따른 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7. “평일”이란 제6호에 따른 휴무일이 아닌 공사 직원의 근무일을 말한다.

제3조(개방대상 시설) 이 지침에 따라 개방하는 임대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시 설 명	위 치	비 고
대강당	1층	면적 : 665㎡, 객석수 : 356석
다목적체육관	지하 2층	면적 : 861㎡
공개공지	사옥 공개공지	

제4조(개방제한) 사옥관리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보수 및 안전상 문제 발생 시
2. 시설유지 관리 및 보안을 위해 사옥관리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공사업무(직원 건강증진 활동 포함)에 지장이 있다고 사옥관리담당부서장이 인정할 때

제5조(개방시간 및 휴무일)

1. 시설의 개방(대여)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개 방 시 간		비 고
	평일(근무일)	휴일	
대강당	개방불가	09:00~18:00	
다목적체육관			
공개공지	상시개방	상시개방	

단, 대강당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평일 미사용 시 부서의 협조를 통해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개최하는 대회 및 행사일 경우 개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행사주관은 협조요청 부서가 주관하며 주차장 사용은 사전협의하여 주차대수를 통제할 수 있다.

2. 사옥관리담당부서장은 제1호에 따른 사용시간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설·추석 명절연휴기간

나. 그 밖에 사옥관리담당부서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등)

1. 제3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또는 단체)는 알리오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 신청을 예약 할 수 있으며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한국석유공사 시설물 사용 신청서(F-PQI-0601-HQ-13) 및 한국석유공사 시설물 사용 서약서(F-PQI-0601-HQ-14)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행사계획을 첨부하여 사용예정일 20일전부터 8근무일 전 18:00까지 공사에 직접 방문 또는 E-mail로 제출하여야 하고 공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사옥관리담당부서장은 제1호의 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접수일로부터 3근무일 내에 시설사용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한국석유공사 시설물 사용 허가서(F-PQI-0601-HQ-15)에 한국석유공사 시설물 사용 허가조건(F-PQI-0601-HQ-16) 등을 첨부하여 허가를 통보할 수 있다.
3. 제1호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3근무일 전 18:00까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
2.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및 단체의 대회 또는 행사
3. 직장인,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4. 그 밖의 행사

제8조(사용의 제한) 사옥관리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 유지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종교·정치·노동 등 집회행위
3.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4. (삭제)
5. 기존시설 또는 설비·장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6.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7. 공개공지 수목, 잔디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8. 신청자가 제12조 제1호 가목 내지 마목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적이 있을 경우
9. 그 밖에 사옥관리담당부서장이 공익 및 시설물관리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사용료)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따라 개방 시설물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기본시설 사용료

구 분	기 준	사용료(시간당)	비 고
대강당	문화공연	30,000원	객석조명 포함
	문화공연 외	60,000원	
다목적체육관	체육경기	30,000원	실내조명 포함
	체육경기 외	60,000원	
공개공지	공공목적	무료	

※ 사용료는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을 참조하였음

나.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시설명	사용료		비 고
		기 준	금 액	
대강당	음향시설 (무선마이크 3채널)	최초 3시간	60,000원	
		초과 1시간	20,000원	
	빔프로젝트	1회	50,000원	
냉·난방	대강당	최초 1시간	100,000원	
		초과 1시간	40,000원	
	체육시설	최초 1시간	50,000원	
		초과 1시간	20,000원	

※ 상기 외 부대시설의 사용은 제6조에 따라 허가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울산 중구 조례를 참조하여 공사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사용자가 신청시간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3. 사용료의 납부는 공사 지정계좌로의 이체를 통하여만 가능하다.
4. 본 시설 개방은 사업적 목적이 아닌 바 사용료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는 불가능하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사옥관리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며 문서로 요청한 행사
2.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울산광역시, 구 또는 의회가 후원하는 문화예술·체육단체가 비영리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공연·전시·체육행사. 단, 공동으로 기획하여 주관 할 경우에 한하며 단순하게 후원명칭으로 지원할 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1.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2근무일 전 18:00까지 공사 담당자에게 사용을 취소할 때
2. 천재지변 또는 우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제12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1. 사옥관리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될 때
  - 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때
  - 라.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 마.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 바. 날씨 등 기상조건에 따라 시설의 바닥상태 등을 확인 후 사용이 곤란하거나 사용자 및 시설물의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경우
- 사.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 2. 제1호의 가목 내지 라목의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공사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3조(입장금지 및 행위의 제한) 사옥관리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 조치 등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 1. 술에 취한 자, 소란을 피우는 자 및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 2. 타인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자
- 3. 시설물 내에서 흡연 또는 음주행위를 하는 자
- 4. 시설물 및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 5. 그 밖에 안전유지상 퇴장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 (준수사항)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공통사항
  - 가. 인화성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안전수칙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킨다.
  - 나. 사옥관리담당자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 다. 사용자는 사용종료와 동시에 정돈 등을 통해 사용 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라.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 마. 사용자는 허가된 사용시간을 지킨다.
  - 바. 사용자는 허가된 사용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다.
  - 사. 사용자는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아. 플래카드, 포스터 등은 허가된 장소와 방법으로만 부착한다.
  - 자. (삭제)
- 2. 대강당
  - 가. 사용자는 음향, 조명 등 부속설비의 사용은 허가된 설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나. 실내에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 3. 다목적체육관
  - 가. 반드시 실내 전용 운동화를 착용하여 이용한다. 다만, 바닥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 매트를 설치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나. 실내에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 4. 공개공지
  - 가. 수목 및 잔디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 나. 연못(벽천)등에 들어가거나 조경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15조 (초과 사용료)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때에는 초과한 시간당 제9조에서 정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 1. 1시간 이하 : 50% 가산
- 2. 1시간 초과 : 100% 가산

제16조(부대설비의 설치)

1.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명기하여 승인을 얻은 시설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삭제)

제17조(손해배상 및 책임 한계)

1.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임대시설 및 부대시설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한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주관하는 경기나 행사 등으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행정상의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진다.
3. 당초 신청서상의 이용목적 또는 제8조(사용의 제한)에 반한 사용에 따른 민원 및 사고에 대하여도 제2호와 같다.

제18조(기타)

1.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선 공사의 규정을 따르며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참조한다.
2. 수영장과 테니스장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에 위탁운영하고 있어 본 대여기준에서 제외한다.
3. 시설 대여 종료 후 공사는 사용자에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하여백]